

비료를 생산·수입·판매하는 업자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서



온라인 쇼핑몰·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때
거짓·과대광고 등 표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



거짓·과대광고시
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



농림축산식품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① 비료 광고 준수사항

「비료관리법」 제20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

누구든지 비료를 **온라인 쇼핑몰·오프라인**에서 **판매**할 때 성분·효과·제조방법 등에 대해 **거짓광고**나 **과대광고**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

「비료관리법」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사항 외의 내용을 거짓으로 표현

01 비료 **등록** 또는 **신고사항***과 **다른 내용**을 표현

02 비료의 **성분·효과·제조방법** 등에 대하여 실제와 **다른 내용**을 표현

03 추천·인증·보증 등을 받은것으로 **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**을 표현

*등록 및 신고사항

등록번호, 비료의종류 및 명칭, 실중량 또는 실용량, 보증성분량, 원료명 및 투입율, 생산연월일, 유통기한, 제조장 소재지 및 명칭(수입의 경우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), 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 등



「비료관리법」제2조에 따른 비료의 정의 외의 내용을 포함하여 표현

01 **살균·살충제, 제초제, 생장조절제**로 **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**으로 표현

치료, 예방, 기피, 유인, 전착 등

살균·살충제의 효과로 혼동할 우려

사례) 탄저병 **치료**, 응애 **살충**, 곰팡이 **억제**, 진딧물 **예방**, 해충 **기피**, 해충 **유인**, **전착** 효과 등

특정작물 생장 억제 등

제초제의 효과로 혼동할 우려

사례) 잡초 **제거**, 제초제 없이도 **잡초관리** 가능, **잡초 방제**

분열, 촉진, 비대, 숙기, 억제 등

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우려

사례) 세포**분열**제, 개화 **촉진**, **비대** 향상, **숙기** 조절, 생장**억제**로 품질향상 등

02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료의 성분·효과·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“가장 좋은”, “최고”, “특수 제조” 등 **모호한 표현**을 사용해 소비자가 현혹 될 우려가 있는 광고

사례) ○○함유하여 **특수 제조**, 효과 **최고**, **특허급 기술**, 수확량 증대에 **가장 좋은** 비료 등



작물을 튼튼하게(건강하게) 하여 **내병(충)성**을 **좋게 합니다**.
비료의 영양공급으로 생장(성장)·발근력 등 **생육에 도움을 줍니다**.

!

비료란?

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하는 물질,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,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

② 보증표시 의무사항

「비료관리법」 제14조

비료생산업자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보증 표시***를 해야 합니다.

*보증표시: 비료의 등록번호, 종류 및 명칭,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

보증표시 표기시 주의사항

- **보증표 내용**은 비료 **생산업 등록증** 또는 **수입업 신고증**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보증표는 **한글**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**선명히** 적어야 하며, 포장 또는 용기 뒤쪽에 **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**을 차지하도록 **붙이거나 인쇄**해야 합니다.
- 쉽게 **지워지지 않도록 인쇄**해야 하며, **표시사항** 중 일부를 스티커(붙임딱지),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**변경하거나 적어서는 안 됩니다.**
- 유통기간: **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**에 대하여 적어야 합니다.
- 생산연월일, 유통기간, 주의사항은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**별도 표기할 수 있으며**, 별도 표기하려면 **표기 위치를 적어야 합니다.**

비료생산업자 보증표

예시

1. 등록번호: 경북 △△ 123-가-20101
 2. 비료의 종류 및 명칭: 가축분퇴비
 3. 실중량 또는 실용량: 20L
 4. 보증성분량: 유기물 40%
 5. 원료명 및 투입비율: 우분 40%, 계분 40%, 톱밥 20%
 6. 생산연월일: 상단 별도표기
 7. 유통기간: 상토, 토양미생물제제만 의무
 8. 제조장 소재지 및 명칭:
○○시 ○○로 000 ◇◇퇴비
 9. 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:
'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 하세요.' 등 공정규격에 정해진 사항을 작성
- 비료생산업자 - 주소: ○○시 ○○로 000
- 전화번호: 000-000-0000
- 성명 또는 명칭: ◇◇퇴비

「비료관리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8호, 제19호 서식 참고

온라인의 경우는?

온라인에서 판매할 때에도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3조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**상품의 성분·용도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**가 있음

③ 공정규격 준수사항

「비료 공정규격 설정」 (농촌진흥청 고시)

비료생산업자 등은 공정규격에 정해진 비료의 종류별 **주성분의 최소함유량,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**,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**부가 성분 함유량**과 **유통기한** 등을 **준수**해야 합니다.

예시

미량요소복합*

주성분의 최소함유량 (%)	다음 성분별 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붕소: 0.05, 구리: 0.05, 철: 0.1, 망간: 0.1, 몰리브덴 0.0005, 아연: 0.05
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(%)	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%에 대하여 비소: 0.002, 니켈: 0.01, 크롬: 0.1, 티탄: 0.04, 아질산: 0.04, 아황산: 0.01, 카드뮴: 0.00018
그 밖의 사항	1. 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. 시비 방법(엽면, 토양 등) 표시 3. 농촌진흥청장이 지정·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재배시험(비효 및 비해) 결과에 따라 등록 4. 미량요소복합비료의 경우 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.

*미량요소복합: 미량요소(킬레이트화된 미량요소 포함)를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

자가 체크리스트

점검 항목	예	아니오
① 제품 포장지에 공정규격을 준수하여 성분을 기재하고 있나요?	☐	☐
② 추천·인증·보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없나요?	☐	☐
③ ‘살균’, ‘살충’, ‘방제’ 등 농약으로 오인될 표현을 쓰지 않았나요?	☐	☐
④ ‘착과 증진’, ‘성장 억제’ 등 생장조절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?	☐	☐
⑤ ‘국내 유일’, ‘세계 최초’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은 없나요?	☐	☐
⑥ ‘수확량 2배’, ‘당도 5Brix 보장’ 등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나요?	☐	☐
⑦ 온라인 광고에서도 ① ~ ⑥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셨나요?	☐	☐

이 외에도 아래 법령을 확인 후 준수사항을 지켜 표시·판매 하세요!

비료관리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「**비료관리법**」을
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「**비료 공정규격 설정**」
(**농촌진흥청 고시**)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!

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자재 제도

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을 생산·제조·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
허용물질*을 원료 또는 재료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.

*허용물질: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된 물질: 토양개량·작물생육용 30종, 병해충관리용 45종

준비서류	신청기관
· 공시신청서 · 생산계획서 · 시험성적서 - 발급: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40개소 · 시료 500g(ml)	·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-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33-250-7269 (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) -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61-750-6325 (친환경농업센터)



농림축산식품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